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교사·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유한 부지, 건축물도 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연구시설·인프라를 통해 연구와 교육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우수인력을 함께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교사·교지의 설립주체 소유 원칙에 대한 특례 (안 제2조제6항제7호 신설)
운영 중인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에서 학연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9조에 따른 운영 중인 대학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협동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단, 사용하는 시설의 위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 ~ ④ (생략)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 ----- ----- -----. ----- -----.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 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 유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1. ~ 6.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7. 제9조에 따른 운영 중인 대학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4조의2제2항에 따른 협동수 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 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단, 사용하는 시설의 위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신설>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